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17283(본소), 2020나17290(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금청구]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17283(본소), 2020나17290(반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827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전은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10. 7.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가단58273(본소), 2020가 단10634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은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본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2,045,7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1,683,3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중 각 “증인”은 “제1심 증인”으로, 각 “감정인”은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줄부터 4줄까지의 양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판결의 근거가 된 제1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는, ①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공정이 30%밖에 완료되지 않았던 상태를 하자로 본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이미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확인이 불가능 상태라면서 피고가 제출한 사진과 주장만을 근거로 하자를 인정하였고, 각 하자별로 1~5장에 불과한 특정 호실이나 부분을 촬영한 단편적인 사진만으로 공동주택 전체에 동일한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점, ③ 감정된 하자보수비용 172,045,704원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액 350,883,436원의 약 50%에 해당할 정도인데, 하자가 그토록 중대하다면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감리자를 통해 하자에 관한 논의를 해야 했음이 마땅한데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 건축 허가시의 설계도면이 아닌 원고가 알지 못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감정한 점, ⑤ 후속 업체인 주식회사 E이 임의로 작성한 물량산출조서를 기준으로 감정하였는데, 위 물량산출조서의 내용은 부정확하여 감정인이 임의로 수치를 조정하여 반영한 점, ⑥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072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위 아파트의 하자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 금액은 총

29,787,196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성고 비율인 29.985%를 적용하면 설령 원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8,931,690원(= 29,787,196원 × 29.985%)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1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범위(별지 표 하자보수비 중 가의 4, 10,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안에서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따른 미시공 상태를 하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시공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잘못 시공되어 보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하자로 판단하였다.

② 피고가 제출하여 감정인이 활용한 사진 자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새로 하수급 받은 주식회사 E이 실제로 기성 부분에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추가 공사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공동주택과 같이 각 세대의 설계 및 시공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하자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공통되는 설계 또는 시공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유형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달리 개별적인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일부 세대를 조사하여 전 세대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와 공사 당시 현장소장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각 하자 항목별로 전체 아파트 중 일정 비율(30~80%)의 세대 또는 구역에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최초 시공비용에 비해서 이미 시공된 것을 뜯어내고 이를 복구하여 다시 시공하는 비용은 통상 더 많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하자보수비용이 기성금의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이 곧 전체 기성 부분의 절반 정도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태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 입회하에 공사 타절 정산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피고가 별도로 하자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은 건축 허가 이후 변경되지 않아 하자 감정의 기준이 된 준공도면과 동일하다.

⑤ 감정인은 주식회사 E이 작성한 물량산출조서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위한 여러 기초자료 중 하나로 참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하자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7. 5.경을 기준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하자를 감정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하자를 모두 보수하여 준공한 이후인 2018. 1.경을 기준으로 한 별개 소송에서의 하자감정결과는 이 사건 하자감정결과의 적정성과는 관련이 없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판결은 제1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중에서 별지 표 하자보수비 중 가의 4, 10, 13 부분을 근거 사진 없이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피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감정인도 피고가 제출한 사진을 감정 대상 건물의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위 배척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사진은 별지 표 하자보수비 중 가의 4, 10,

13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5.경 촬영된 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위 사진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최근에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당심에서 비로소 감정인에게 제시하였고, 위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은 위 사진이 당시의 현장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 F이 당초 위 부분에 관한 감정서 작성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하자감정결과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항소장에 거의 4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는 거의 4, 10, 13 부분 모두에 관하여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형철, 판사 안복열, 판사 김현진

별지